

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 번	안 호	213
--------	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7.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□ 제안사유

공유재산관리의 근간이 되는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관리조례와 동조례 시행규칙을 운영하고 있는 바 국유재산법시행령 상의 국유재산제도와 공유재산관리조례상의 공유재산제도가 불균형하여 운영 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현행 「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및 영세농가에게 토지매각시,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항력의 사고발생시, 폐천부지를 대부받은자에게 매각시, 농경지를 대부받은 실경작자에게 매각시」 등에 적용하던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대상을 확대하여 「아파트형 공장용지,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, 중소 기업자의 공장용지,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및 유치한 공장용지로 매각」 하는 경우에도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신설
(안 제22조 제8호)
-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공유재산인 토지에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경우에 적용하던 사용 및 대부요율 1000분의 25를 연도에 관계없이 확대 적용코자 함 (안 제23조 제6항)

□ 개정근거

'97년도 공유재산 관리지침 시달(내무부공기 13330 - 83 '97. 2. 5)

□ 기타 참고자료 : 별첨

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,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용지,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 한 농공단지,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

제23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⑥ 주거용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1,000분의 25로 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)

제2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조례 시행후 부과되는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부터 적용 한다.